

○ ○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

제 호

수 신: 공소청의 장 (검사:)

제 목: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(참고인등)

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제1항에 따라 귀청에서 참고인증지한 사건의 참고인등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.

참고인등	성 명					
	주 민 등 록 번 호					
	직 업					
	주 거					
	전 화	(자택)		(직장)		
대상사건	피 의 자					
	죄 명					
	송 치 일 자					
	송 치 번 호					
	사 건 번 호					
발 건 경 위						
비 고						
첨 부						

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수사관